

건설산업 “미래를 주도하는 사업으로”

건설산업의 선진화 방안이 지난 3월 26일 확정되면서, 앞으로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3.26 15:00, 세종실)에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부처가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건설산업은 GDP의 14%, 고용의 8%, 해외건설 수주 476억불('08년) 등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실상은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기술역량, 공공사업의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개방화, 효율화, 투명화로 잡고, 추진과제로 ▲건설규제완화로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등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일반·전문건설업간 영업범위제한이 2010년까지 폐지된다. 이럴 경우 전문건설회사도 일부 복합공사에 대해 원수급이 가능하고, 종합업종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터키공사의 설계 심사 주체가 전문가 집단에서 발주기관의 자체 심의로 바뀐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가격 심사 제도가 강화되는 등 공공 공사의 발주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아울러 터키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고 공사이행보증서 납부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따라 향후 건설산업이 과거의 비효율에서 환골탈태하여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국제산업보건대회 서울 개최 확정

2015년 국제산업보건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3월 2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제29회 국제산업보건대회에서 제31회 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산업보건분야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행사로, 매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국제산업보건대회의 국내 유치로 국내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내 산업보건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민기 이사장은 “지난 1월 공단명칭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보건이 추가된 바와 같이 근로자 건강은 산재예방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2015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내 산업보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위해 어머니가 간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3월 26일 경인지역본부 강당에서 인천지역 안전생활실천연합 어머니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머니 안전파트를 Safety Mamma Mia(세이프티 맘미아) 창단식을 가졌다.

20명으로 구성된 세이프티 맘미아는 향후 인천지역내 약 5,000개소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산업현장 안전보건 애로사항 청취 및 산업재해예방홍보물 전달 등 산업현장 안전보건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서서 일하는 근로자 위한 의자비치 '5월 중 점검'

서서 일하는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의무 이행실태 점검이 5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 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5월 중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는 관내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의자 비치 여부 등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한 확인 점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남부지청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고객서비스가 강조되는 도소매 업종에서는 서서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당연시되면서, 그동안 이에 대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청 박종선 지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의자 비치 등 근골격계 예방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대한 지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판매, 계산 등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요통, 다리의 부종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서울남부지청 관내의 요통 및 유사 질병 발생

근로자수는 151명으로, 지난 2007년(170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

전국의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달부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과 분진, 소음 등 177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유해물질을 주로 취급하거나 분진이나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다. 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비용은 전액 지원받는다.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 사업장 유무를 확인 및 통보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공단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약 11만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검진결과를 DB화 하여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10인 미만 사업주가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8월부터 건물 철거시 석면함유 사전조사"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

올해 8월부터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전문업체로부터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받아야 한다. 또 만약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먼저 제거해야 철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 3월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주택과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인 건축물이나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등 면적의 합이 15㎡(부피의 합 1㎡) 이상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는 해체 및 철거 작업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특히 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등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분무재·내화 피복재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 석면 해



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하고 제거해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설계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냉동·냉장창고 시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물·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사전평가하고 근로자 보호계획을 수립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도다. 그 밖에 노동부는 새장여거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여전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일환으로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884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847개(96%) 적발현장에 대하여 관련 조치했다고 밝혔다.

4월 10일 노동부가 발표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미실시한 건설업체 18개소는 형사입건 조치됐다. 그밖에도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 20개소, 안전보건진단명령 2건,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명령 48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지시 3,481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정현욱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해빙기점검을 통해 재확인했듯이 건설현장은 여전히 범위반과 재해위험이 많은 만큼, 사업주의 지속적인 재해예방관리와 감독기관의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월15일에 발생한 판교 연구소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재래형 사고예방을 위해서 발주, 설계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챙기도록 건설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